

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

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영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·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·제21조의2”를 “영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·제22조의2·제22조의4·제22조의5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·제21조의2·제21조의4·제21조의5”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자격증의 박탈)”을 “(자격증의 취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허위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5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5에 따라 허위”로, “자에”를 “자 또는 교원자격증을 대여·알선한 자에”로, “박탈한다”를 “취소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서 순회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.

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다만, 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3 또는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9조의5”를 “다만, 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3 또는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9조의5”로 한다.

제1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제1호 중 “1

5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”를 “시·도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하며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같은 학교 졸업생을 포함하여야”로 한다.

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사전에 같은 학교 재학생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제30조 중 “박탈하고자”를 “취소하고자”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나목1) 및 2)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전공과목: 50학점 이상

2) 교직과목: 22학점 이상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) ①2024년 3월 1일 이후 위원을 임명·위촉할 당시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같은 학교 졸업생을 임명·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0호 중 “박탈”을 “취소”로 한다.

참고1

신·구조문 대비표 (교원자격검정령)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·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·제21조의2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영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·제22조의2·제22조의4·제22조의5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·제21조의2·제21조의4·제21조의5-----.
제5조(자격검정의 결격사유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.	제5조(자격검정의 결격사유) <삭제>
제6조(자격증의 박탈) ①교육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.	제6조(자격증의 취소) ①----- -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5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5에 따라 허위 --- 자 또는 교원자격증을 대여·알선한 자에 --- 취소한다.
제8조(교육경력(의 범위) ①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3항, 별표 1 및 별표 2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3항,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“교육경력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	제8조(교육경력(의 범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	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

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. 다만, 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3 또는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.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7조의2(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(위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)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

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서 순회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. 다만, 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3 또는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9조의5-----.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사전에 같은 학교 재학생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③ -----
----- 시·도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하며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같은 학교 졸업생을 포함하여야 -----

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 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. 1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<u>15년</u>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(조교로서 근무 한 경력은 제외한다) 2. 3. (생략) <u>③</u> ~ <u>⑧</u> (생략) 제30조(청문)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<u>박탈</u>하 고 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 여 한다.	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3년</u> ----- 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<u>④</u> ~ <u>⑨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8항 까지와 같음) 제30조(청문) ----- ----- <u>취소하</u> <u>고자</u> ----- -----.
---	--

□ 별표 1

현행	개정안
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. 이수학점기준 1) 전공과목: 50학점 이상(<u>제4조제4항제2 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30학점 이상</u>) 2) 교직과목: 22학점 이상(<u>제4조제4항제2 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하지 아니한다</u>)	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. 이수학점기준 1) 전공과목: 50학점 이상 2) 교직과목: 22학점 이상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502